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기간 및 이용절차)

① 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③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02조 (계약 목적)

-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1년 1월 1일 기준)

- (1)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한도액(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단위 : 원 / 2021년도)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1회당)	21년 본인부담
30분	14,750	2,213
60분	22,640	3,396
90분	30,370	4,556
120분	38,340	5,751
150분	43,570	6,536
180분	48,170	7,226
210분	52,400	7,860
240분	56,320	8,448

-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본인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6% or 9%

-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 장보기 비용: 시장 동행시 실제 물품 구입 비용
-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0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1)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무

-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제0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2 장 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01조 (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3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1조 (서비스내용)

-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환복,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02조 (비용의 부담)

-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한도액(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단위 : 원 / 2021년도)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1회당)	21년 본인부담
30분	14,750	2,213
60분	22,640	3,396
90분	30,370	4,556
120분	38,340	5,751
150분	43,570	6,536
180분	48,170	7,226
210분	52,400	7,860
240분	56,320	8,448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본인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6% or 9%

② 센터는 매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④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현금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시행한다.